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8. 2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가.「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나.「내수면어업법」 제23조에 의거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군에서 정한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표 1의 일부 개정

1) 별표 1 구분란의 제3호 “신상에 관한 증명” 중 ①“신원” 사항을 삭제함(안 별표1)

2) 수수료 요율 인상

- 별표 1 구분란의 제5호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중 ”⑨공장등록증명”과 동란의 (인가, 허가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의 제1호 “일반행정관계” 중 “③공유재산의 대부신청”과 “⑦중개업등록신청시” 및 제6호 “보건·사회관계” 중 “④의료기관 개설신고”와 “⑤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의 수수료 요율을 각각 인상함(안 별표 1)

나. 별표 1의 요율 신설 사항 추가

- 별표 1 구분란 중 (인가, 허가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의 제3호 “농수산관계”에 ⑤ 내지 ⑨를 신설하고, 제7호 “문화공보 관계”에 ⑯ 및 ⑰을 신설함(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지방자치법」제 139조

2)「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 및 별표

3)「내수면어업법」제23조 및「수산업법」,「내무부 예규」제756호

나. 예산관련사항 : 해당없음

다. 기 타

1) 개정조례안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07.12.24 ~ 2008. 1.14 (21일간)
- 예고방법 : 성주군 공보,성주군 홈페이지,군・읍・면 게시판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구분란의 (증명)중 제3호 “신상에 관한 증명”의 “①신원”란을 삭제한다.

별표 1 구분란의 제5호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중 “⑨공장등록증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기 준	요 액
5.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⑨ 공장등록증명	1통	1,000

별표 1 구분란의 (인가, 허가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 중 제1호 “일반행정 관계”의 ③ 및 ⑦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기 준	요 액
(인가, 허가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 1. 일반행정 관계 ③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⑦중개업등록신청시 - 법인인 중개업자 -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1건 1건 〃	 계속 3,000 30,000 20,000

별표 1 구분란의 (인가, 허가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 중 제3호 “농수산 관계”에 ⑤란 내지 ⑨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기 준	요 액
3. 농수산관계		
⑤ 수산물가공업 등록	1건	3,200
⑥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	1건	3,200
⑦ 내수면어업 면허 신청	1건	4,000
⑧ 내수면어업 허가 신청	1건	3,200
⑨ 내수면어업 면허연장 허가 신청	1건	3,200

별표 1 구분란의 (인가, 허가신고, 원청등록, 지정, 확인등)중 제6호 “보건, 사회관계”의 ④ 내지 ⑤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기 준	요 액
6. 보건, 사회관계		
④ 의료기관개설신고	1건	40,000
⑤ 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20,000

별표 1 구분란의 (인가, 허가신고, 원청등록, 지정, 확인등)중 제7호 “문화공보관계”에 ⑯ 및 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기 준	요 액
7. 문화공보관계		
⑯ 체육시설업 신고	1건	30,000
⑰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10,00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신·구 조문 대비표

(단위 : 원)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증명) 1. ~2.(생략) 3. 신상에 관한 증명 ① 신원 3.②~5.⑧ (생략) (재교부) ⑨공장등록증명 ⑩~11.(생략) (인가,허가신고,신청, 등록,지정,확인등) 1.~1.② (생략) ③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④~⑥(생략) ⑦중개업등록신청시 -법인인 중개업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⑧~⑨ (생략) 2.(생략) 3. 농수산관계 ①~④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1통 1통 1건 1건 1건	 200 300 계속 2,000 10,000 3,000		(증명) 1. ~2.(현행과 같음) 3. 신상에 관한 증명 <삭 제> 3.②~5.⑧(현행과 같음) <삭 제> ⑨공장등록증명 ⑩~11.(현행과 같음) (인가,허가신고,신청, 등록,지정,확인등) 1.~1.② (현행과 같음) ③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④~⑥(현행과 같음) ⑦중개업등록신청시 -법인인 중개업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⑧~⑨ (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3. 농수산관계 ①~④ (현행과 같음) ⑤수산물가공업 등록 ⑥유해어법사용허가신청 ⑦내수면어업 면허신청 ⑧내수면어업허가신청 ⑨내수면어업면허연장 허가 신청	 1통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000 계속 3,000 30,000 20,000 3,200 3,200 4,000 3,200 3,200	

【별표 1】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신·구 조문 대비표

(단위 : 원)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4.~5.(생략)				4.~5. (현행과 같음)			
(인가,허가신고,원청 등록,지정,확인등)				<삭 제>			
6.보건,사회관계				6.보건,사회관계			
①~③ (생략)				①~③ (현행과 같음)			
④의료기관개설신고	1건	20,000		④의료기관개설신고	1건	40,000	
⑤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0,000		⑤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20,000	
7.문화공보관계				7. 문화공보관계			
①~⑮ (생략)				①~⑮ (현행과 같음)			
<신설>				⑯체육시설업 신고	1건	30,000	
<신설>				⑰체육시설업변경신고	1건	10,000	
8. (생략)				8.(현행과 같음)			